

무배당 V-dex변액연금보험 II

2011. 05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구 분	보험종목의 명칭
주계약	무배당 V-dex변액연금보험Ⅱ(1형:기본형, 2형:LTC형)(적립형, 거치형)
종속특약	무배당 V-dex LTC소득보장특약

2. 보험기간 및 연금지급형태

가. 주계약

구 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기본형	종신연금플러스형 -보증기간부[개인형, 신부부형]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지급) -보증금액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LTC형	종신연금플러스형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지급)		

나. 무배당 V-dex LTC소득보장특약

- 주계약 보험계약일부터 주계약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3. 보험료 납입기간

가. 주계약

- 적립형 :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 거치형 : 일시납

나. 무배당 V-dex LTC소득보장특약

- 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가. 주계약

(1) 적립형

-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 가입최고나이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5]세

(단, 3년납은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7]세와 60세 중 적은 나이이며, 5년납은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5]세와 65세 중 적은 나이)

(2) 거치형

-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나. 무배당 V-dex LTC소득보장특약

- 가입최저나이 : 30세

- 가입최고나이 : 주계약과 동일함

5. 주계약 연금개시나이

가. 1형: 기본형

- 45세 ~ 80세

※ 개인형 30년보증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45세 ~ 77세

※ 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48세 ~ 80세(30년보증의 경우 77세)

※ 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여자인 경우 45세 ~ 80세(30년보증의 경우 74세)

나. 2형: LTC형

- 45세 ~ 80세

※ 30년보증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45세 ~ 77세

6. 보험료 납입주기

가. 주계약

(1) 기본보험료

- 적립형 : 월납

- 거치형 : 일시납

(2)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나. 무배당 V-dex LTC소득보장특약

- 월납, 일시납

7. 보험료의 정의 및 납입한도(주계약)

가. 기본보험료

- (1) 적립형 :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구좌당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3년납일 경우 구좌당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5년납에서 가입나이가 45세에서 59세 이하인 경우 구좌당 매월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5년납에서 가입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구좌당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7년납에서 가입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구좌당 매월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 (2)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100만원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7)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단,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는 매회 5만원이상 금액으로 한다.
- (2) 거치형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7)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한다. 단, 매회 5만원이상 금액으로 한다.

8.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의 정의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이하 “납입유예”라 함)할 수 있는 제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계약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신청 조건 및 한도 등

(1) 신청조건

다음 각 목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보험계약일부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절반(약정 납입월수 기준) 이상 경과한 계약. 단, 10년납 이상은 5년이상 경과한 계약
- (나)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이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이하 “약정보험료”라 한다)보다 큰 계약
- (다) 무배당 납입면제특약 이외의 선택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계약

(2) 1회 신청 가능기간

납입유예 신청월수에 해당하는 약정보험료의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이 하이어야 하며, 12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 1회 신청당 납입유예가능기간(월수)

$$= \text{Min}\left(\frac{\text{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text{약정보험료}} \right), 12\text{개월}$$

(3) 최대가능기간

신청횟수와 관계없이 5년납은 최대 2년(24개월), 5년납 초과는 최대 3년(36개월) 이내로 한다.

다. 납입유예의 종료

-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을 안내(미납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 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정한다.
- (3)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유예종료를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된다.

라.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단, 추가납입 보험료는 납입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 경우 최종 보험료 납입이 완료될 날의 다음달 계약해당일(이하 “납입기간 종료일”이라 한다)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다.
- (3)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 (4) 납입면제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납입유예를 한 계약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기 납입유예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9.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10. 예정위험률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계약 체결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주계약(LTC형)과 무배당 V-dex LTC소득 보장특약의 무배당 예정 장기간병 발생률, 무배당 예정 장기간병자 출현율, 무배당 예정 장기간병자 사망률 및 무배당 예정 중증 치매 발생률(이하 ‘장기간병위험률’이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장기간병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간병위험률의 변경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할 수 없으며, 변경후 기준위험률(장기간병위험률 변경 당시의 국내 추계인구수를 이용하여 나이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률)은 변경전 기준위험률의 80~120%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나. 제‘가’항에 따라 장기간병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 이전까지 장기간병위험률의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또는 연금액의 변동 내역 등의 계약변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다. 회사는 실제 위험률과 예상 위험률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제‘가’항에 관계없이 장기간병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제‘가’항에 의하여 장기간병위험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위험률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한다.
- 마. 제‘가’항의 예정위험률 변경으로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이 인상된 경우에 변경 후 인상분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 바. 제‘마’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인상분”을 잔여 보험료납입기간(단,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일시에 납입)동안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사. 회사는 계약 체결후 5년이 지난 때부터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사차 관련 실적 및 장기간병위험률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험종목 및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가. 보험종목의 변경

보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금개시 10년 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한다. 보험종목 변경 후에는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내용을 따른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 (1) 3년납 ▪ 5년납 ▪ 7년납으로 변경할 경우
- (2) 이미 경과된 납입기간으로 변경할 경우

12.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단, 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나.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형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LTC형의 경우 약관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하거나, 기본형 약관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LTC형의 경우 약관 제50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제13조(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제14조(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제15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다’항, 제18조(목표수익률 달성일에 관한 사항), 제16조(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제‘가’항 및 제19조(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신청 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감액신청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기본보험료}}{\text{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2) 인출신청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신청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신청금액}}{\text{인출신청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제‘나’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신청 직전(인출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신청(인출신청)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나’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3.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4.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시점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단, 제22조(계정간의 자금이체) 제‘다’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이체금액(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이후 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1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단,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중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제16조(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제‘아’항(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제(2)호(좌당 기준가격)에서 정한 좌당 기준가격(이하 "기준가"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급(단,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인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 나.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납입유예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유예기간 중 잔존 납입유예월수 × 약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중도인출의 효력이 발생되며, 신청 후 중도인출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시 최저사망보험금 및 연금개시시 최저연금적립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12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 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부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마. 제‘가’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적립형은 구좌당 300만원 미만,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20%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바.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 사. 제‘바’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후 중도인출시 해당 평가기간 개시일(단, 제20조(주가지수 연동에 관한 사항) 제‘다’항에 정한 첫번째 평가기간 개시일 전일 이전은 목표수익률 달성일) 기준 “이미 납입한 보험료”부분과 “초과수익”부분 각각의 계약자적립금 비율로 인출한다.

16.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 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제‘가’목 또는 제‘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

금보증비용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적용한다.

- (4)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 (가)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 중 계약소멸, 해지 등 감소계약이나 연금이 개시된 계약, 제22조(계정간의 자금이체) 제‘다’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 (5)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단,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유지계약의 최저연금적립금 기준준비금 합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일반계정에서 부담한다.
 - (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 중 계약소멸, 해지 등 감소계약이나 연금이 개시된 계약, 제22조(계정간의 자금이체) 제‘다’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채권형Ⅱ

주로 채권[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채권형Ⅱ(2006.1.5설정)로 한다.

(나) 혼합형Ⅱ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혼합형Ⅱ(2006.1.5설정)로 한다.

(다) 가치주혼합형Ⅱ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가치주혼합형Ⅱ(2006.1.5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 부분은 내재가치대비 저평가 우량주 위주로 장기안정적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운용

(라) 성장주혼합형Ⅱ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성장주혼합형Ⅱ(2006.1.5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 부분은 성장성이 뛰어난 중소형주 위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용

(마) 대표주혼합형Ⅱ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4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대표주혼합형Ⅱ(2006.4.3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업종대표주 위주로 장기안정적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운용

(바) 배당주혼합형Ⅱ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배당주혼합형Ⅱ(2006.4.3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고배당 우량주 위주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통해 KODI(배당지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사) 인덱스혼합형Ⅱ

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등에 펀드순자산(NAV)의 4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인덱스혼합형Ⅱ(2006.2.10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 부분은 KOSPI200 등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아) 팬 유러피안 혼합형Ⅱ

범유럽권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변액연금보험Ⅱ의 팬 유러피안 혼합형Ⅱ(2007.7.2 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MSCI 유럽지수 등 해외 글로벌 투자지표의 수익률을 초과달성하거나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자) 알파인덱스혼합형Ⅱ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의 알파인덱스혼합형Ⅱ(2007.11.1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KOSPI200 등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차) BRICs스타혼합형Ⅱ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의 BRICs스타혼합형Ⅱ(2008.1.2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브릭스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예: MSCI BRIC)의 수익률을 초과달성하거나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카) 아시아퍼시픽스타혼합형Ⅱ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지역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의 아시아퍼시픽스타혼합형Ⅱ(2008.1.2설정)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아시아-태평양(일본제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예: MSCI-AP ex Japan(KRW))의 수익률을 초과달성 하거나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타) 5대그룹주혼합형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서, 무배당 뉴V-dex변액연금보험의 5대그룹주혼합형(2009.12.31설정)으로 한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국내5 대그룹주^{주1)} 위주로 투자 하도록 운용

주1) 국내5대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1항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상위5개 기업집단 및 그 방계기업집단(창업주가 동일한 기업집단을 지칭함) 소속의 계열회사 주식을 지칭. 단, 5개 기업집단은 기업환경 및 시황변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 펀드는 12개 이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 (3)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 (4) 펀드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제(1)호의 각 펀드 유형별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헤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상기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운용보수

펀드별 특별계정운용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비용
채권형 II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3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958904%)
인덱스혼합형 II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50%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1369863%)
알파인덱스혼합형 II	
혼합형 II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5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1506849%)
가치주혼합형 II	
성장주혼합형 II	
대표주혼합형 II	
배당주혼합형 II	
5대그룹주혼합형	
팬 유러피안 혼합형 II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7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2054795%)
BRICs스타혼합형 II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9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260274%)
아시아퍼시픽스타혼합형 II	

(2) 특별계정수탁보수

펀드별 특별계정수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비용
채권형 II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05% (특별계정적립금의 일 0.000136986%)
인덱스혼합형 II	
알파인덱스혼합형 II	
혼합형 II	
가치주혼합형 II	
성장주혼합형 II	
대표주혼합형 II	
배당주혼합형 II	
5대그룹주혼합형	
팬 유러피안 혼합형 II	
BRICs스타혼합형 II	
아시아퍼시픽스타혼합형 II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제‘나’항에서 정한 펀드 중 회사가 정한 범위이내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펀드별 편입 비율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 제(1)호에 의하여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른다.
- (3)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투입된다.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은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마. 계약자의 펀드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펀드별 보험료 편입비율과는 별도로 계약자적립금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3)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4)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바.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동재배분 주기”라 한다)마다 제‘라’항 제(1)호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된다. 단,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제(1)호의 경우 펀드 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제‘라’항 제(4)호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된다.
- (3)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보험년도 기준 연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선택을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2) 제(1)호에 의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아.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펀드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펀드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펀드의 순자산가치}}{\text{펀드의 총 좌수}}$$

* 당일 펀드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펀드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자.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펀드별로 다음 각 목에 의한다.
 -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나) 제(가)목에 의한 펀드가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펀드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다) 제(가)목 및 제(나)목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차. 펀드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펀드를 폐지할 수 있다.
 - (가) 당해 각 펀드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나)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다) 당해 각 펀드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라) 제(가)목 내지 제(다)목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펀드를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카.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비용, 보수, 회계감사비용 및 채권평가비용 등을 펀드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17. 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일(단, 3년납 및 거치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날) 전일 이전까지 목표수익 전환옵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목표수익률 달성일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표수익 전환옵션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일(단, 3년납 및 거치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날)의 전일 이전까지 목표수익 전환옵션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제‘가’항에 따라 목표수익 전환옵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수익 달성일 다음날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

적립금을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한다. 또한, 이 때부터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다. 목표수익 전환옵션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이후에는 다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18. 목표수익률 달성일에 관한 사항

- 가. 목표수익률 달성일이란, 목표수익 전환옵션을 신청한 계약으로서 납입기간 종료일(단, 3년납 및 거치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날)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중 계약자적립금이 목표수익률 이상 달성한 날을 말한다.
- 나. 제‘가’항의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준 130%로 한다.
- 다. 제‘가’항의 목표수익률 달성일은 매 금요일(금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가장 가까운 영업일) 펀드의 증가를 기준으로 한다.

19.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2) 제18조(목표수익률 달성일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 이후 특별계정 자산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초과수익”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의한 방법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며, 제22조(계정간의 자금이체) 제‘다’항에 따라 이체된 금액을 보증한다.
 -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 (나) “초과수익”은 제20조(주가지수 연동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을 적용하여 적립한다.
 - (다) 제(나)목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및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부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는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 (라) 직전 평가기간 종료일 계약자적립금의 보전을 추구하여 운용한다.
- (3) 제(2)호에서 초과수익이란 목표수익률 달성일의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이체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 이후에는 주가지수연동수익률 및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된다.
- (4)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 이후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평가기간 개시일(단, 첫번째 평가기간 개시일 전일 이전은 목표수익률 달성일)기준 “이미 납입한 보험료”부분과 “초과수익”부분 각각의 계약자적립금 비율로 적립하고, 직후 도래하는 평가기간 개시일까지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 (5)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때부터 특별계정운

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20. 주가지수 연동에 관한 사항

가. 연동지수(Index)

(1)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지수로서, 이 보험에 적용하는 연동지수(Index)는 KOSPI(Korea Stock Price Index) 200을 사용한다. 위의 지수의 마감가격(종가)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KOSPI(Korea Stock Price Index) 200 : 한국종합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대표적인 주식 200개 종목으로 산출한 시가 총액식 주가지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KOSPI200이 아래의 예시에서와 같이 주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연동지수로 변경 가능하고, 이 경우 변경된 사실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예시 : KOSPI200이 폐지되고, KOSPI300으로 대체되거나 KOSPI200의 실제거래가 미미한 경우 등.

나. 주가지수연동기간

(1) 주가지수연동기간이 시작되는 날(이하 “주가지수연동기간 개시일”이라 한다)부터 주가지수 연동기간이 종료되는 날(이하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이라 한다)까지를 말한다.

(2) 주가지수연동기간 개시일은 목표수익률 달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로 한다. 단, 주가지수연동기간 개시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증권시장 영업일의 연동지수를 적용하며, 한국거래소의 매매중단사태로 연동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가 재개되는 첫번째 거래소영업일의 연동지수를 적용한다.

(3)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은 연금개시일 이전 가장 가까운 평가기간 종료일로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익률 달성일로부터 연금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 주가지수평가기간

주가지수연동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구분한다.

(1) 첫번째 평가기간의 개시일은 주가지수연동기간 개시일로 한다.

(2) 매 평가기간의 종료일은 해당 평가기간이 시작하는 날(이하 “평가기간 개시일”이라 한다)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하 “평가기간 종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단, 평가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가장 가까운 증권시장 영업일의 연동지수를 적용하며, 한국거래소의 매매중단사태로 연동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전 가장 가까운 거래소영업일의 연동지수를 적용한다.

(3) 차후 도래하는 평가기간 개시일은 직전 평가기간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로 한다.

단, 평가기간 개시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가까운 증권시장 영업일의 연동지수를 적용하며, 한국거래소의 매매중단사태로 연동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가 재개되는 첫번째 거래소영업일의 연동지수를 적용한다.

라. 주가지수연동수익률에 관한 사항

- (1) 초과수익을 적립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율로 회사는 1개월 단위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2) 이 보험에 적용되는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은 아래와 같다.

매월 평가기간 개시일의 연동지수와 평가기간 종료일의 연동지수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반영하여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을 계산한다. 단,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은 최고수익률(cap)과 최저수익률(floor)을 한도로 한다.

$\text{주가지수연동수익률(\%)} = \text{Max}[\text{Min}\left\{\frac{\text{월말지수} - \text{월초지수}}{\text{월초지수}} \times \text{참여율} \times 100, \text{최고수익률(cap)}\right\}, \text{최저수익률(floor)}]$
--

- 주) 1. 월말지수 : 당월 평가기간 종료일의 연동지수 마감가격(종가)
- 2. 월초지수 : 당월 평가기간 개시일의 연동지수 마감가격(종가)
- 3. 참여율 : 매월 연동지수의 증감률 중 계약자에게 약정한 비율
- 4. 최고수익률(cap) : 매월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의 최고한도
- 5. 최저수익률(floor) : 매월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의 최저한도
- 6. 회사는 위의 월말지수, 월초지수, 참여율, 최고수익률(cap) 및 최저수익률(floor)을 1개월 단위로 주가지수연동수익률과 함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21.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2. 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가)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단,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제27조(기타사항) 제‘가’항 또는 제‘바’항에 따라 이체한다)
 - (나)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가)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나) 중도인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다)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라)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 (마)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 (바)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가) 일반계정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가)목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나.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 한함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일반계정에서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
 - (나) 목표수익률 달성일에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 있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나) 중도인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다)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 (라)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경우
 - (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회사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계산한다.

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의 자금이체

□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목표수익 전환옵션의 효력이 발생한 계약에 한함

- (1)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이 경우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일반계정에서 다시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한다.
- (3) 제(2)호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4) 제(2)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로 하며, 이체 금액은 목표수익률 달성일 펀드의 증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시까지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연체된 보험료를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연체보험료 완납일 이후에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부활(효력회복)승낙일을 기준으로 이체한다).

2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단,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료의 납입연체를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 다. 보험계약대출이율
 - 회사가 정한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서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 이후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주)}+1.5%이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주) 1.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 이후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 자산연계형 공시이율
- 2. 연금개시이후 : 일반계정 공시이율

라. 보험계약대출금액 처리에 관한 사항

- (1)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1.5%』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적립한다.
- (2) 계약자는 제‘가’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목표수익 전환옵션을 신청한 계약의 경우 목표수익률 달성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5.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가.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금액 계산시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제14조(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제‘나’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연금액 계산시 적용이율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연금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일반계정 공시이율로 한다.

26.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운용계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해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가.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

- (1)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산출된 이율을 적용한다.

$$\text{◎ 공시이율(\%)} = (A1 \times 0.6 + A2 \times 0.4) + 0.5\%$$

단, 산출된 공시이율이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이익률’의 75% 보다 작은 경우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이익률’의 75%를 공시이율로 결정하고,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이익률’의 100% 보다 큰 경우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이익률’의 100%를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 (가) A1 :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직전 5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직전 5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st \text{가중이동평균이율} = [Mi(-5) + Mi(-4) \times 2 + Mi(-3) \times 3 + Mi(-2) \times 4 + Mi(-1) \times 5] / 15$$

Mi(-5) : 산출시점 직전5월의 16일부터 직전 4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Mi(-4) : 산출시점 직전4월의 16일부터 직전 3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Mi(-3)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주)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나)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이익률은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투자영업수익」에서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이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times (12/6) \times 100}{(\text{직전7월말 현재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특정자산 비연계부분 운용자산} - \text{직전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지차

$$= \text{특정자산 비연계부분 투자영업수익} - \text{특정자산 비연계부분 투자영업비용}$$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2.5%(단,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2.0%)로 한다.

(4)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나. 일반계정의 공시이율

(1) 일반계정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textcircled{\circ} \text{공시기준이율}(\%)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0.55 + \text{외부지표금리} \times 0.45$$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나)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외부지표금리(%) = (A1×0.6 + A2×0.2 + A3×0.2)

A1 : 국고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3) + Mi(-2)×2 + Mi(-1)×3] /6

Mi(-3)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 평균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 평균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 (주) 1.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2.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A)의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평균값(민평평균)’으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단, 2011년 5월 1일 이전의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364일)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일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2.5%(단,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2.0%)로 한다.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27. 기타사항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제(1)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월계약해당일-제2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수금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수금비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단,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한다).

나.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 및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보험계약관리 내용 통지

(1) 회사는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제2항 제4호에 따라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반기별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에게 이체금액 및 이체사유일 등(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 변경내용 포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하며, 계약자가 전자우편

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회사는 다음 각목의 사유 발생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 또는 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한다.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익률 달성일 다음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주가지수연동기간의 중단

□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1)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등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가지수연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2)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구입자금 규모가 작아 해당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3)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계약자에게 적정한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바.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1)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예정이율로 적립하고(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사.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서 평가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기본형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 (LTC형의 경우 약관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평가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에 대한 해당 평가기간의 주가지수연동수익률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아.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적립형의 경우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단,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구좌 가입시 이를 더하여 적용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기본보험료의 0.7%
기본보험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기본보험료의 1.2%
기본보험료 200만원이상	기본보험료의 1.5%

(2)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기본보험료의 0.3%
기본보험료 3억원이상	기본보험료의 0.5%

(3)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제(1)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할인되지 아니한다.

자. 조기 연금개시에 관한 사항(기본형에 한함)

기본형의 경우, 제17조(목표수익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연계형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에서 목표수익률 달성일 이후 도래하는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에 계약자는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금개시를 할 수 있다. 단, 연금개시나이는 45세(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48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적용에 관한 사항

(1) 대상계약

계약일로부터 5년(단, 거치형은 3년) 이상 경과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으로서, 사망보험금 수령일부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전환전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단 기본형 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법적 배우자

(3) 운용방법

(가)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그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한다.

(나) 전환신청 당시 전환전계약의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목에 따라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카.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적용에 관한 사항

(1) 전환신청 및 취소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전까지 전환(전환신청의 취소를 포함)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전환시기

전환전계약의 연금개시시점

(3) 전환금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웰빙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4)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는 전환전계약의 계약일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단, 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한다.

타. 무배당 100세과워변액연금전환특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

(1) 전환신청 및 취소

계약자가 무배당 100세과워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일-제2영업일」까지 전환(전환신청의 취소를 포함)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신청비율(0%~70%까지 5%단위)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 웰빙자금선택시 전환신청비율의 최고한도는 $70\% \times (1 - \text{웰빙자금선택비율})$ 로 한다.

(2) 전환시기

전환전계약의 연금개시시점

(3) 전환금액

전환금액은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전환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최저한도 : 100만원

(나) 최고한도

$(\text{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 - \text{웰빙자금선택비율})$

(다) 전환신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환금액은 최고한도로 자동변경되며, 최저한도 미만일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다.

(4)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

(가) 전환신청 이후에는 웰빙자금의 신청 및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개시시까지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되며,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다) 무배당 100세과워변액연금전환특약은 전환전계약의 계약일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라) 무배당 100세과워변액연금전환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단, 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한다.

파. 계약자가 원할 경우 또는 판매채널별로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다.

하.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거. 보험안내자료 등의 필수 기재사항 및 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 등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계약체결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한 회사의 설명 및 안내 여부를 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운용한다.

(1) 보험기간 중 장기간병위험률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또는 연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2) “일상생활장해상태” 및 “중증(重症)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

(3) “일상생활장해상태” 및 “중증(重症)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및 동보험의 계약 무효(또는 계약 취소 선택) 사유

(4) 과거 10년간의 동보험 및 유사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장기간병위험률이 변경된 경우, 그 적용 내역 등

너. 회사는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서 보험종목의 명칭 전·후로 보험요율 변동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예:보험요율변동가능형)를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